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첩사 소속 군인 등의 수사권 폐지〉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21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전종덕의원 등 13인
2. 제안일 : 2025. 8. 18.
3. 회부일 : 2025.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함)는 군사보안, 정보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내란·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등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하였음.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여론 조작 등 방첩사 또는 그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그간의 수사권 남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그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Ⅲ. 검토의견

□ 현행법은 ①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¹⁾ 중 수사·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군사경찰과”) 소속 군인과 수사업무 담당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②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직할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²⁾(“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③ 군검찰단 소속 검찰수사관(제47조)을 군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제43조³⁾).

1) 「군인사법」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병과)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및 군수과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2)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2조(설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각 목 생략)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각 목 생략)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업무 (각 목 생략)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각 목 생략)

3) 「군사법원법」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

○ 이러한 군사법경찰관 중 ②의 직무범위는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및 제2장(이적의 죄)의 죄,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누설)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⁴⁾에 규정된 죄(“군사보안 관련 범죄”)의 수사이며, 군사법경찰관 중 ①은 그 외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음(제44조⁵⁾).

- 다만, 군사법경찰관 중 검찰수사관(③)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음. (군)검찰수사관은 「군사법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군검사를 보좌하고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 직무범위는 군검사의 수사 범위(제37조)와 동일하게 일반 범죄(①의 수사범위) 및 군사보안 관련 범죄(②의 수사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실무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⁶⁾

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에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4. 검찰수사관

4)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

5) 「군사법원법」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 개정안은 위 군사법경찰관 중에서 ②에 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군무원 등을 군사법경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종전 ②가 담 당해 온 군사보안 관련 범죄의 수사권을 군사경찰과 군인·군무원(①) 및 검찰수사관(③)인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로 통합하려는 등의 내용임 (안 제43조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제43조(군사법경찰관)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	<삭 제>

6) 「군사법원법」 제47조(군검찰단 직원·직무) ③ 검찰수사관은 군검사를 보좌하며,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u>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u> 4. (생략) <u>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u> <u>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u> 1. <u>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u> <u>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u> 2. <u>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u> <u>「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u>	4. (현행과 같음) <u>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u> <u>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u>

현행	개정안
<u>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u>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1. (생략) 2. <u>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u> 3. (생략)	제46조(군사법경찰리)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 군사보안 관련 범죄의 수사권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군의 문민통제 원칙(헌법 제74조⁷⁾), 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 뿐만 아니라 「국군조직법」 및 부대 창설에 관한 행정입법 등 군의 조직 및 부대 체계에 관한 규율을 함께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7)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055